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96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 보훈병원 감면 지원	3
2.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배우자 승계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등 지급액 결정 시 최저생계비 고려	14
4. 수송시설 이용지원	16
※ 참고자료	2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11. 28.
3. 회부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는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과 수당 지급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이들의 희생을 고려할 때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다른 국가보훈 관계 법률에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자에게도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사망 시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한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 적용대상자에게도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 보훈병원 감면 지원

-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⑪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u>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대상자 등은 그 상이처 및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해당 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음.¹⁾

□ 반면, 현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 한하여 보훈·위탁병원 진료비를 국가에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 ⑧ (생략)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이하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 법률	적용 대상자	지원 범위(보훈·위탁병원)
고엽제법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부상을 포함한 모든 질병 국비 지원 ※ '16.6.23. 이후 등록 신청하여 경도 판정을 받은 자는 인정질병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진료 제외 질병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 타인에 의한 위해 - 유전(2세환자 제외) - 군 복무 전 발생한 것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기준 미달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급기준 미달자)	▶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인정 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원활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보훈병원 진료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 보훈병원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참전유공자 배우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119억 600만원(연평균 23억 8,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국가보훈부 추산에 의하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의료 지원을 확대할 경우 5년간 785억원(연평균 157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존대상자 수	98,652	98,652	98,652	98,652	98,652
신규대상자 수	871	871	871	871	871
배우자 수	56,942	52,958	49,296	45,931	42,839

- 주: 1) 기존대상자 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49,489명), 기 사망하여 제적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49,163명)를 합산한 수로, 개정안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진료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이 유지됨
 2) 신규대상자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신규등록자 수임
 3) 배우자 수는 2023년 기준 기존 대상자수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72.1%)을 곱하여 2023년 배우자 수를 추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배우자수에 무공수훈자 수권배우자 사망률(8.1%)을 적용하고 신규대상자 871명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한 신규진입자 수를 합하였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우자의 보훈병원 진료감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입원	239	227	215	205	195	1,081
외래	816	784	754	725	699	3,778
약제	1,525	1,463	1,406	1,352	1,301	7,047
합계	2,579	2,474	2,375	2,282	2,195	11,90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체계 자구와 관련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유공자의 유가족도 법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관계법령에서는 「국가보안법」, 「형법」 등에 규정된 특정 범죄로 인해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이 확정된 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을 해당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³⁾하고 있으므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보훈관계법령상 유가족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 28조⁴⁾에 따른 법 적용 배제 대상⁵⁾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⁶⁾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후유증과 달리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의료지원 요구사항과 정책 우선순위, 진료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 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 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4)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현행 제도 상 그 예우 대상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등으로 한정되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환자의 가족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6) 개정안 제7조의3제3항(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배우자 승계)을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사항임

2.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배우자 승계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망 시 현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권리를 그 배우자가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② (생략) <u><신설></u>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u>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⑥ ----- ----- ----- ----. <u>이 경우 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u>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② (생략)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 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 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7조의3제5항-----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이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이라 함)은 중증도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는 월 59.6만원~123.4만원씩,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월 137.1만원~219.8만원씩 지급⁷⁾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인원은 2025년 2월 기준 각각 31,465명, 200명임.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을 배우자가 승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의 배우자 승계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사망 시 생계가 곤란해지는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직무 수행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⁸⁾으로, 신체적 희생이 있어도 비교적 경미한 등급인 상이 7급에 대해서는 유족 보상금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또한, 신체적 희생 없이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의 경우도 그 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을 직무수행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동일하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개정안 부칙에서는 수당의 배우자 승계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우 이전

8) 현행 보훈보상제도는 생명·신체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희생을 입지 않았으나 공적이 있는 분들(예: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명예선양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이 갖는 보상수급권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 희생에 따라 유가족이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임.

에 사망한 수당 지급 대상자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정책처 비용 추계⁹⁾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4,084억 6,200만원(연평균 816억 9,200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및 7급 상이자도 형평성을 이유로 배우자 승계를 요구하는 경우 재정소요액¹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권 승계 배우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	3,290	3,563	3,859	4,179	4,526
신규미망인 발생인원	2,372	2,569	2,782	3,013	3,263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	2,372	4,749	7,147	9,581	12,068

주: 1)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은 2023년 사망인원에 최근 3년간 사망인원 증감률 8.3%를 적용하여 추정

2)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은 고엽제 환자 사망인원에 무공수훈자 유배우자율 72.1%를 적용

3)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는 2026년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개정안에 따른 최초 수급권 승계 배우자로 가정한 후, 다음연도부터 전년도 미망인 발생인원 누계에 무공수훈자 배우자 사망률 8.1%를 적용한 후 당해연도 신규미망인 발생인원을 합산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2024.11월 179명)는 평균 연령 46세로 추계기간 동안 사망인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엽제 수당 수급권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서 제외함(국회예산정책처)

10) 국가보훈부는 향후 5년간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승계 시 연간 822억원, 7급 상이자 배우자 승계시 236억원, 무공수훈자 배우자 승계 시 76억원 등 연간 총 1,194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 노출과의 상관성이 밝혀지지 않는 않았으나, 사회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질병치료 및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한시적으로 본인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이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것은 수당 지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현 보훈보상체계에서 직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이 없는 경우 지급되는 각종 수당¹¹⁾은 일신전속적으로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며,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배우자 승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명)	2,372	4,749	7,147	9,581	12,068	-
월 지급단가(천원)	841	879	919	960	1,003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23,939	50,091	78,812	110,370	145,250	408,4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1)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등 지급액 결정 시 최저생계비 고려

- ☐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6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②(생략) <u><신설></u> ③·④(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후단 신설></u>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②(현행과 같음) ③(생략) ④·⑤(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 ----- ----- ----. 이 경우 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은 중증도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은 월 59.6만원~월 123.4만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은 월 137.1만원~219.8만원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의 경우에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 보훈 체계 법령은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 혁명공로수당 등 여러 수당을 두고 있으나, 수당의 지급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 다른 수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의 금액은 1인가구 최저생계비 보다 높으므로(경도 환자 제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의 경우에는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고엽제수당 비교('25년기준)>

(단위: 천원)

최저생계비*	구 분	고도	중등도	경도
1,435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1,234	909	596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2,198	1,707	1,371

* 채무자회생법 579조 생계비 준용(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기준 중위소득 60%)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인상률은 보상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수송시설 이용지원

- 개정안은 현행법 적용 대상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8조의8(수송시설의 이용지원)</u> <u>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u> <u>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u> <u>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u> <u>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u>

	<u>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
--	--

- 현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전·공상군경 등 상이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수송시설의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¹²⁾ 요금을 감면한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¹³⁾

<수송시설 이용지원 근거법률 및 감면대상>

근거 법률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전상군경 등과 상이등급 1급 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1급 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3) 고속열차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에스알과 협약에 의해, 민영버스는 전국버스연합회와 수송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임(또는 감면)금액에 대해 일부 보조금을 지원(2023년 기준 감면액의 철도 34.8%, 버스 전액)하고 있음.

근거 법률	감면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동승보호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특수임무부상자 및 상이등급1급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 포함) 및 상이등급 1급 대상자의 동승보호자 1인

자료 : 국가보훈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 및 내용>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감면률
열차(고속철 포함)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연 6회 무임 후 50% 감면
도시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무 임
버 스	시내버스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무 임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시외버스 70% 감면, 농어촌버스 100% 감면
		6급 이하 상이자	30% 감면
	고속버스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50% 감면
		6급 이하 상이자	30% 감면
	내항 여객선 (연 6회/도서거주자 연 12회)	애국지사, 1~5급 상이자	무 임
		6급 이하 상이자	50% 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7급은 국가유공상이자 1~5급에 준하며, 8~14급은 할인대상

※ 애국지사, 1급 상이자는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자료 : 국가보훈부

□ 개정안은 상이등급이 없는 고엽제후유증환자¹⁴⁾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도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임.

□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의하면, 개정안에 따라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감면한 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약 398억원(연평균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현재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이 아닌 무공·보국수훈자 및 참전유공자도 형평성을 이유로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14)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대상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지급대상(명)	59,567	58,912	58,264	57,623	56,989	—
지급단가(원)	131,409	134,037	136,718	139,452	142,241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7,828	7,896	7,966	8,036	8,106	39,8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상당한 금액의 국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수송시설 운영기관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의 경우, 신체적 희생이 인정되어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을 받은 자이므로 지원 취지에 동의하나, 상이등급이 없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지원대상이 아닌 무공·보국수훈자 및 참전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의 운임 감면 시행은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참고 1

대상자별 보훈의료 지원 범위

【 국비진료 대상 】

근거 법률	적용 대상자	지원 범위(보훈·위탁병원)
독립유공자법 제17조	▶ 애국지사	▶ 모든 질병 국비지원
국가유공자법 제42조, 제73조, 제74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지원공상군경 포함) ▶ 4·19혁명 부상자 ▶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포함)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2.7.1. 이후 등록 신청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제73조의2	▶ 상이등급기준 미달자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보훈보상자법 제51조	▶ 재해부상군경 ▶ 재해부상공무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제51조의2	▶ 상이등급기준 미달자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5·18민주유공자법 제34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등록 신청하여 12~14등급을 받은 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3조	▶ 특수임무부상자	▶ 상이처 및 일반 질병(부상 포함) 국비 지원 ※ '16.6.23. 이후 등록 신청하여 7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고엽제법 제7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부상을 포함한 모든 질병 국비 지원 ※ '16.6.23. 이후 등록 신청하여 경도 판정을 받은 자는 인정질병 외 질환 10% 본인 부담 ▶ 진료 제외 질병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 타인에 의한 위해 - 유전(2세환자 제외) - 군 복무 전 발생한 것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기준 미달자)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급기준 미달자)	▶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 인정 질병 및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제대군인법 제20조 제1항	▶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재해부상 제대군인	▶ 상이처와 그로 인한 합병증 국비 지원

【 감면진료 대상 】

구분	적용 대상자	보훈병원 (약제비 포함)	위탁병원 (비급여 제외 · 약제비 일부대상 지원)
국비진료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 6 ·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면제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 무공수훈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160,000원 한도
	▶ 보국수훈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4 · 19혁명공로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독립유공자 유 · 가족	▶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적용 대상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약제비 미지원
국가유공자 유 · 가족	▶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12.7.1. 이전 등록 신청자는 유가족 모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75세 이상 아래 해당자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 6 · 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자 (선순위유족이 보상금 구분대상 부 또는 모인 경우 협의 등 1인 지정) * 약제비 미지원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75세 이상 아래 해당자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 보상금을 받는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약제비 미지원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 · 가족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16.6.23. 이전 등록 신청자는 유가족 모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5 · 18민주 유공자와 유 · 가족	▶ 5 · 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16.6.23. 이전 등록 신청자는 유가족 모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해당 없음
	▶ 기타5 · 18민주화운동희생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기타5 · 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선순위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 '16.6.23. 이전 등록 신청자는 유가족 모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 감면 * 약제비 : 1인당 연간 252,000원 한도
창군자 및 제대군인	▶ 국군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해당 없음 - 단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약제비 미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의 위탁병원 원외약제비는 '22.10월부터 시행 / '23.10.월부터 연령제한 폐지
자료 : 국가보훈부

참고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 현황

구분		이 용 대 상	할인율	'24 지원예산 (백만원)	
공공기관	열차 (KTX·SRT 포함)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1~7급)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	2,163 (국고보조)	
	지 하 철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공상포함, 1~7급) * 보훈보상(지원공상) 비공공기관 수송시설인 민영노선(공항철도, 신분당선) 제외	무 임	-	
비공공기관	버 스	시내버스 *좌석·광역 (급행)·마을 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무 임	8,484 (국고보조)
			시외버스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고속버스 * 포미업 고속 버스 제외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 할인	
		국내 여객선	· 애국지사 · 1-5급 상이국가유공자 ·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 임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 6-7급 상이국가유공자 · 8-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할인 육상거주자: 연 6회 도서거주자: 연 12회		
	국내선항공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50% 할인	개 별 업체 자체 지원	
		· 참전유공자 등 비상이 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수권유족	30% 할인		
	국제여객선	· 애국지사 · 상이국가유공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20% 할인 * 한국 ↔ 중국 및 일본(한국 발권 승선권에 한함) * 일본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	개 별 업체 자체 지원	

자료 : 국가보훈부